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현장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자 모집 공고문

본 모집 공고를 통해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현장의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회자를 모집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입회를 희망하시는 입주 예정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6년 3월 2일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작성 및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주계약서 사본 등)를 현장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1) 모집일정 : 2026년 2월 24일(화) ~ 2026년 3월 2일(월)
※ 신청자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 모집대상 : 입주예정자(계약자 본인 외 가족구성원은 불가능)
- 3) 선발인원 및 방식 : 2명~4명 (입회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발)
- 4) 공고방식 : 분양 홈페이지
- 5) 참여방식 : 전자우편 (chosy21@lotte.net)으로 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스캔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이메일 발송

※ 제출서류

- ① [첨부3] 입회신청서 : 내용 작성 후 서명 인 필수
- ② 입주계약서 사본

- 6) 발 표 : 2026년 3월 6일(금), 전자우편(E-mail)/개인연락(문자) 예정.

■ 측정개요

- 1) 위 치 :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현장(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
- 2) 측정세대 : 법적 기준에 근거해 선정된 총 9세대(100~199 : 3세대 / 100세대마다 : 1세대씩)
- 3) 측정항목 : 폼알데하이드, VOCs 5종(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라돈

■ 입회일정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현장사무실 도착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 대리 입회 불가함)
09:00 ~ 09:20	측정 계획 및 입회사항 안내	
09:30 ~ 10:00	측정 세대 입회	

■ 측정당일 입회자 협조 요청사항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용)

- 1) 입회자는 측정일 현장 공기질측정 시간 30분 전 안내된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2) 선정된 입회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3) 선정된 입회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입회가 불가할 경우 사전 연락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자 외 가족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 측정 오류 등의 사유로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 입회자는 재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6) 측정 시 다음 측정 영향 행위(5가지)를 제한 합니다.

- | |
|---|
| ① 향수, 향이 강한 화장품의 사용 불가 ② 흡연 불가 ③ 사진촬영 불가 |
| ④ 개인용품(라돈 간이측 정기 등)의 휴대 불가 ⑤ 입회자 단독행동 불가 |

■ 문 의

- 롯데건설(주) 실내공기질 현장담당자 : 전자우편(chosy21@lotte.net)

첨부 1.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공고문

첨부 2.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첨부 3. 입회 신청서

첨부 4.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안내사항]

■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목적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선정된 입주예정자께서는 관련법에 따른 입회자 확인사항과 준수사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입회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측정 관련 사항 사전 숙지) 입회자는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해 입회 목적, 주의사항, 안전수칙, 중점 점검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용품 휴대 금지) 입회자는 개인이 소유한 라돈 간이측정기 등을 측정 현장에 지참 할 수 없습니다.
 -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수 사용,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흡연 등은 입회 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며, 입회 당일 입회를 마치는 시점까지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계없는 사진 촬영 및 측정 현장에서 입회자의 단독 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안전수칙

- 입회자는 시공사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하여야 합니다.
 - 현장에서 뛰지 않으며, 통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 위험한 작업용 기계·기구 등에 손을 대거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측정 입회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입회자 확인사항

- 입회자는 아래 항목과 같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측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본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 (세대공기 밀폐확인) 실내공기 시료채취 전 밀폐한 실내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외부 공기와 면하고 있는 창문 및 대문이 모두 닫혀 있는지 점검
 - (내부인테리어) 불박이 장의 문, 방문의 문, 싱크대 문 등 내부 인테리어 제품의 문들이 모두 열려 있는지 확인
 - (측정장비위치) 시료채취 장치 또는 측정장치가 거실 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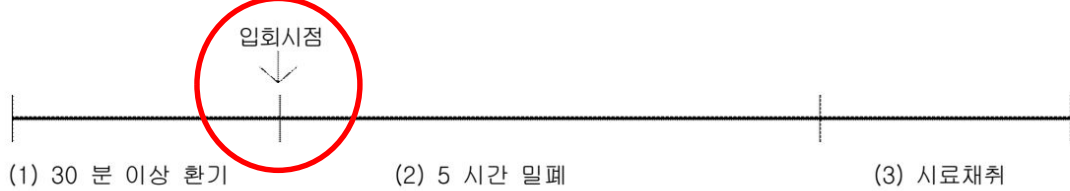
■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

-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
- (측정대상)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측정방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측정항목) 폼알데하이드 등 7개 항목
 - 폼알데하이드
 -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라돈
- (권고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항 목		권고기준(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210 $\mu\text{g}/\text{m}^3$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벤 젠	30 $\mu\text{g}/\text{m}^3$
	톨 루 엔	1,000 $\mu\text{g}/\text{m}^3$
	에틸벤젠	360 $\mu\text{g}/\text{m}^3$
	자 일 렌	700 $\mu\text{g}/\text{m}^3$
	스 티 렌	300 $\mu\text{g}/\text{m}^3$
라 돈		200 Bq/m ³

■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

① 폼알데하이드 등 라돈 이외 오염물질



(1) 30분 이상 환기

단위 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 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

(2) 5시간 이상 밀폐

외부 공기와 면하는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 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 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3)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 시료채취 시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라돈



(1) 30분 이상 환기 (2) 5시간 이상 밀폐, 상동

(3) 라돈측정

밀폐 후 실내 농도측정은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48시간 측정한다. 측정 시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환기설비 가동 및 측정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한다. 측정 시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자연환기설비는 최대개방,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적정"단계로 가동

입회자 분들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